

2024년 익산시 벤처기업 성장동력 판로 확대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판로확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13일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익산시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 활성화 지원

□ 모집대상

- 모집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벤처기업 대상

□ 모집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6월 13일(목) 자정까지

□ 선정규모 : 총 10개사 내 · 외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화 촉진 기술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분야별 시험성적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컨설팅료 포함)	10개사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 TV(PPL포함) 신문, 잡지, 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홈쇼핑 입점 온 오프라인 입점 대행 등 지원 ·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임대료, 운송비, 통역비, 항공비, 해외시장 동향자료 구입 등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 임대료)지원 · 계약체결 각종 서류(계약서, 통관/서적 서류, 결제 서류 등) 작성 대행 해외바이어 초청경비(항공비, 통역비, 숙박비) 및 해외 출장비(항공비, 통역비), 바이어 산용조사, 무역보험 등 지원 (단 : 지원선정기업은 고용 1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전라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본사) 벤처기업
 - 판로 확대 지원 자격 요건 : 연차 제한 없음
- (*단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 신청제외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I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지정지원(최대 13,000천원) / 총 10개사 내 · 외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화 촉진 기술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분야별 시험성적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컨설팅료 포함)	10개사	기업당 최대 1천3백만원 내/외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 TV(PPL포함) 신문, 잡지, 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홈쇼 핑 입점 온 오프라인 입점 대행 등 지원 ·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임대료, 운송비, 통역비, 항공비, 해외시장 동향자료 구입 등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 임대료)지원 · 계약체결 각종 서류(계약서, 통관/서적 서류, 결제 서류 등) 작성 대행, 해외바이어 초청경비(항공비, 통역비, 숙박비) 및 해외 출장비(항공비, 통역비), 바이어 산용조사, 무역보험 등 지원 (단 : 지원신청기업은 고용 1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		

- 기업 대응 자금은 지원금의 20%(현금 20%)로 구성

<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분야	합계	지원금	대응자금(현물)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마케팅지원	16,250,000원	13,000,000원	3,250,000원
	(100%)	(80%)	(20%)

IV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6월 13일(목) 자정까지
- 접수 및 문의

지원분야	목 록
익산시 성장동력 판로 확대 지원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TEL) 070-4176-3222 E-Mail : ysh91@jvada.or.kr - 접수처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www.jvada.or.kr)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파일은 1개로 합쳐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 벤처기업 확인증		
4	■ 대표자 신분증		-
5	■ 개인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 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 법인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6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택	-
7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없을 시 매출 및 자산 증빙이 가능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첨부)		2023년
8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해당자
9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시험분석, 인증 등)		해당자

□ 심사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및 절차

요건검토	심사운영	선정안내	협약체결 등
· 분야별 중복지원 검토 · 업력, 업종 등 지원자격 요건 충족 검토	서면심사 발표심사	지원대상자 안내	· 사업비 배정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24. 5월 13일	'24. 6월 중	'24. 6월 중	'24. 6월 ~ 11월 중순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요건검토	서류평가
2024. 5. 13.(목) ~ 6. 3.(화)	2024. 6월 중	2024. 6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화지원	최종선정	발표평가
2024. 6. ~ 11. 30.	2024. 6월 중	2024. 6월 중
중간/최종 기업모니터링	성과교류회	사업종료 및 최종보고
2024. 8월 / 10월	2024. 11월, 12월	2024. 12월 말

○ 지원프로세스

공 고(기술역량)	접수 및 평가	최종선정
JVADA 홈페이지	외부위원 서면, 대면 평가	개별 통보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네트워킹 (실증지원 보고회 포함)	협약 체결
계획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교육/ 사업추진프로세스 안내/ 집단 자금활용 계획 등 컨설팅	집행계획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최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결과보고서 및 기업성과관리 (합동 행사 참여 등)	최종보고
계획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지원업체 결과보고서 검토, 성과 상시 요청 관리 / 네트워킹 및 합동 성과교류회 등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내용)

- 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고용, 매출), 향후 시장경제성 등을 중점 평가

[공통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판로확대 지원의 타당성	· 기술의 우위성, 혁신성, 독창성(자별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판로확대 지원 소용예산 타당성 · 판로확대 지원 사업 진행에 대한 타당성	25
목표 명확성, 실현 가능성 및 향후 사업성	· 가격, 품질경쟁력, 생산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확장 가능성 · 사업화 기반 역량, 생산 및 영업력	25
사업기간 적정성	· 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 · 대상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25
사업의 파급효과	·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25
합계		100

□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면접 형태의 발표 및 서면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 평가위원회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1조 평가위원회 조항에 의거하여 섭외

제11조(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선정 또는 성과평가
 -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창업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창업기업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평가위원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에서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